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26

창 원 지 방 법 원

제 1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15나36789 사해행위취소
원고, 항소인	[redacted]군
피고, 피항소인	1. A
	2. B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5. 11. 20. 선고 2015가단79907 판결
변 론 종 결	2016. 10. 18.
판 결 선 고	2016. 11. 8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(이하 '제1부동산'이라 한다) 중 45.4/100 지분에 관하여, 피고 B과 C 사이에 제1부동산 중 27.6/100 지분 및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(이하 '제2부동산'이라 한다) 중 73/100 지분에 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26

하여 각 2014. 6. 23. 체결된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각 증여계약'이라 한다)을 취소한다. C에게, 피고 A은 제1부동산 중 45.4/100 지분에 관하여 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등기소 2014. 6. 23. 접수 제134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, 피고 B은 제1부동산 중 27.6/1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34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2부동산 중 73/1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34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1~3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가. C은 1997. 6. 17. [redacted] [redacted]구 D 부동산을 처분하였고, 원고는 1998. 11. 16.경 C에게 1998. 11. 30.을 납부기한으로 위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주민세(양도소득) 11,049,84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.

나. C은 2014. 4. 28. 제1, 2부동산 중 73/10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2014. 6. 23. 피고 A에게 제1부동산 중 45.4/100 지분에 관하여, 피고 B에게 제1부동산 중 27.6/100 지분 및 제2부동산 중 73/1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4. 6. 17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.

2. 원고의 주장

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26

고들 명의로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원고가 1998. 11. 16.경 C에 대하여 주민세(양도소득)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여 조세채권(이하 '이 사건 조세채권'이라 한다)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시효소멸의 항변

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.

이 사건 조세채권은 지방세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구 지방세법(법률 제5476호, 1997. 12. 24. 일부 개정된 것) 제30조의5에 따라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고, 여기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란 일반적으로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의미한다.

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1998. 12. 1.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3. 12. 1.경 시효로 소멸하였다.

다. 시효중단 내지 시효이익 포기의 재항변

1)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00. 2. 12., 2000. 5. 12. C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로 이 사건 조세를 납부할 것을 독촉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'독촉 또는 납부최고'를 하였으므로,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.

설령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, 원고는 2005. 4. 20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26

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C 명의의 농협([redacted]지점) 및 [redacted]은행 예금을 압류하고 농협([redacted]지점) 예금에서 197,100원을 추심하였는데, 채무자인 C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. 이로써 C은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할 수 있는 채무승인을 하였다.

피고 A과 C의 손자 G는 2015. 6. 15., 2015. 6. 17. 원고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.

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, 채무자인 C 또는 피고들이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, 피고들의 시효소멸 항변은 배척되어야 한다.

2) 판단

가) 시효중단 여부

구 행정절차법(법률 제5241호, 1996. 12. 31. 제정된 것) 제24조는 처분이 원칙적으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 제2호, 제2항 제2호는[1]는 독촉 또는 납입최고의 효력이 발생한 때 지방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가,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따른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중단된 시효가 새롭게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방세의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'독촉 또는 납입최고'는 원칙적으로 [redacted]으로 납부기간을 새롭게 정하여 한 독촉 또는 납입최고라고 보아야 한다.

갑 8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체납자 징수독려 사항에 '담당자 H, I이 2000. 2. 12., 2000. 5. 12. C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로 이 사건 조세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'는 취지의 기록이 남아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.

1)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 지방세기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, 이 사건 조세채권은 1998년경 성립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. 다만 지방세기본법과 구 지방세법은 소멸시효 관련 규정에 있어 큰 차이가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대신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26

그러나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여 실제로 이를 발송했다고 단언할 수 없을 뿐 아니라, 체납고지서에서 납부기간을 새롭게 정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, 한편 [redacted]이 아닌 전화로써 한 납부 독촉을 구 지방세법이 정한 독촉 또는 납입최고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,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) C의 시효이익 포기 여부

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데,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,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,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(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).

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, 채무자 이외에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은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(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5다12446 판결 참조).

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설령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자인 C이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할 수 있는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,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상대방인 피고들은 피보전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독자적으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26

피보전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항변할 수 있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다) 피고들의 시효이익 포기 여부

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오히려 갑 8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A과 C의 손자 G가 2015. 6. 15., 2015. 6. 17. 원고 측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담당자 J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라. 소결론

이 사건 조세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,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홍기

판사 정연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26

판사 김선중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2-26

목 록

1. [redacted]시 [redacted]구 E 대 1,430㎡
2. [redacted]시 [redacted]구 F 도로 146㎡. 끝.